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### 1. 「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」

#### 가. 제정 이유

- 「관세법」 제53조에 따르면 덤핑조사가 시작된 경우,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산업피해 등에 대한 본조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확정조치 전 잠정조치 종료로 국내산업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잠정조치 부과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

#### 나. 제정 내용

-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덤핑 조사 기간 중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을 차단해, 동 물품의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생산 업체의 피해를 조기에 방지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